

1. 法人税法 施行規則中 改正令

財務部令 第1,911號 1993. 2. 27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영 제7조 제6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신고서 또는 납세지변경신고서는 별지 제62호 서식과 같다.

제4조 의3 제2항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제3항(종전의 제1항)중 “영 제14조제4항”을 “영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동조에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영 제14조제4항제1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지하도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국가 월말 현재 임대보증금을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 받고 임대한 면적
기부채납된 지하도의 건설비 월말 현재 임대가능 면적
②부동산을 임차하여 전대하는 경우에
영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보증금등의 적수는 전대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차보증금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임차보증금등의 적수가 전대보증금등의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④영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보증금등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보증금등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2. 차입금상환액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상환누계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3.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는 월말 현재의 건설비상당액에 경과일수를 곱하는 방법

제5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7호중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항만근로자의 퇴직충당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를 “사단법인 한국항만운송협회(항만근로자의 퇴

직총당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와 사단법인 철도하역협회(육상하역근로자의 퇴직총당금관리운영사업에 한다)"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타채권) 영 제19조제2항제3호에서 "기타 재무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채권을 말한다.

1.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선금금·미수금 및 선일자 수표상의 채권
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주세·특별소비세 및 교육세의 미수금

제9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의 채권 및 신용카드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의 채권으로서 재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11.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제12조제3항중 "영 제47조"를 "제20조제2항"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소득표준율"을 "표준소득률"로 한다.

제17조제14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4호중 "청소년육성법"을 "청소년기본법"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제4호 중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기타 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8조제3항제1호중 "6월(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의 경우에는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1년)"을 "6월"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부지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 규정된 공장용부지(외자도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계류 및 동부품제조업이나 전자기기 및 동부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공장용부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2년, 기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한 후 1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 범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제18조제3항제2호가목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의 가동으로 인하여 소음·분진·악취등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안의 토지로서 당해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인접한 토지를

그 토지소유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경우에는 공장구내에 있는 토지의 면적과 이를 합한면적을 부속토지로 한다)"로 하고, 동호나목중 "제6호 가목·나목·다목"을 "이 호 다목, 제6호 가목·나목·다목"으로 하며, 동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창고용 건축물과 석유·가스 기타 화재 또는 폭발가능성이 있는 위험물의 저장·보관 또는 판매를 하는 시설물의 부속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제18조제3항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산림법에 의한 준보전임지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험증인 임야(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제18조제3항제5호가목본문중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

로서 1년간의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7이상인 부동산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가 농민지도사업을 위하여 소유하는 농경지·묘포장용 부동산"으로 하고, 동호나목본문중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 그 중앙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6호라목중 "일반골프장"을 "대중골프장"으로, "최소기준면적의 1.8배를 초과하는"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으로 한다.

제18조제3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염전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1헥타르당 연간소금생산량이 35톤에 미달하는 부동산

제18조제3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동법에 의한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과 별표13에 규정된 청소년수련시설별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

제18조제4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건축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

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로 제공한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의 토지

제18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제3항 및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가액은 다음의 가액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3.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4.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본문의 규정에 의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로서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공시된 지가 또는 동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8조제9항제1호중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수입금액} = \frac{\text{당해사업연도의 연간수입금액}}{\text{비율}} + \frac{\text{직전 사업연도의 연간 수입금액}}{\text{당해 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 + \frac{\text{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가액}}{\text{부동산가액}}$$

제18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본문 및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또는 평

가 가액

제18조제19항제2호중 “제21조제1항 내지 제4항”을 “제21조”로 한다.

제18조제21항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43조의2제11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부동산을 말하며, 각호에 규정된 주업의 판정은 제3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18조제21항제1호 · 제2호 · 제4호 ·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7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야 · 농경지 · 묘포장용 부동산 · 목장용 부동산, 다만, 임업 · 농업 또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또는 운동경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4. 휴양시설업용 부동산. 다만,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6. 골재채취장용 부동산. 다만, 골재채취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8. 임대전용 부동산(건물 기타 지상정착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임대한 법인이 임

대건물등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건물
등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임
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규모이하의
사원용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9. 법인의 자가전용주차장 및 주차장업
용 토지. 다만,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하
는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외
한다.

제18조에 제2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㉙ 영 제43조의2제8항에서 “기타 재무부
령이 정하는 기금등으로부터 차입한 금
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
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의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
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4.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
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
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

제18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7항(종전의 제6
항)제1호중 “여행알선업”을 “여행알선

업(관광진흥법에 의한 일반여행업을 제
외한다)”으로 한다.

⑥ 영 제43조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
하는 관광숙박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에 의한 관광호텔업·국민호텔업 및 한
국전통호텔업을 말한다.

제20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
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에 대하여
는 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는 제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제2항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시행
령”을 “시설대여업법시행령”으로 한다.

제45조제3항제9호중 “별지 제6-2(1)호 내
지 제6-2(13)호서식”을 “별지 제6-2
(1)호 내지 제6-2(14)호 서식”으로 한
다.

제47조중 “소득표준율”을 각각 “표준소득
률”로 한다.

제50조제4호중 “수산업협동조합”을 “수산
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으로 하
고, 동조제7호중 “새마을금고”를 “새마
을금고와 그 연합회”로 하며, 동조제11
호중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을 “시설대
여업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14호 내지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한 인삼협동조
합과 그 중앙회

15. 신용관리기금법에 의한 신용관리기금
 16. 수출보험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제59조의3제1항본문중 “도매물가지수”를
 “생산자물가지수”로, “월간 도매물가지
 수”를 “월간 생산자물가지수”로 한다.
 제68조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
 조제4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영 제50조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
 한 감가상각방법신고서 또는 감가상각방
 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
 다.

⑩영 제85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
 산평가방법신고서 또는 재고자산평가방
 법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8호 서식과 같
 다.

[별표 1]의 6. 기구 및 비품, (2)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의 세목란중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의 개인용컴퓨터란 다음에 소프트
 웨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프트웨어 4

[별표 2]의 38. 서비스업의 설비별번호
 381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810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용 설비	개인용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 기타의 컴퓨터 및 그 부속설비
5		

[별표 1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⑩란의 “지정기부
 금한도초과액”을 기부금한도초과액”으
 로, 제⑩란 중 “(⑪+⑫+⑬)”를
 “(⑪+⑫)”로, 제⑭란 중 “(⑮+⑯
 +⑰)”으로 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3] ①구분란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계산기
 준란의 “(지급액 × $\frac{10(15)}{100}$) + (평균지출
 액 초과액 × $\frac{10}{100}$)”을 “(지급액 × $\frac{5(10)}{100}$)
 +(평균지출액 초과액 × $\frac{25}{100}$)”로 하고,
 동 구분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계산기
 준란의 “투자금액 × $\frac{3}{100}$ (단, 국산기자재
 는 $\frac{10}{100}$)”을 “국산기자재투자금액 ×
 $\frac{10(7)}{100}$)”으로 한다.

[별지 제6-14호 서식(갑)] 제⑨란의 “⑤
 와 ⑦중 적은 금액”을 “⑤와 ⑧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제⑩란중 “[⑪+⑫)
 × $\frac{6}{직전사업연도월수}$]”으로 한다.

[별지 제14(1)호서식(갑)]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의 2서식] · [별지
 제26호 서식] · [별지 제38호 서식] · [별
 지 제39호 서식] · [별지 제41호 서식] ·
 [별지 제45호 서식] · [별지 제46호 서

식] · [별지 제49호 서식] · [별지 제52호 서식] · [별지 제55호 서식(1)] 및 [별지 제63호 서식] 중 “⑨”을 각각 “(서명 또는 인)”으로 한다.

[별지 제6-2(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1)호서식 부표2] · [별지 제6-1호서식] · [별지 제6-2(11)호서식(을)] · [별지 제6-3(2)호서식] · [별지 제6-4호서식(갑)] · [별지 제6-6호(2)서식] · [별지 제6-6호(3)서식] · [별지 제6-9호서식(갑)] · [별지 제7호서식] · [별지 제12호서식] · [별지 제43호서식] ·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 [별지 제21호서식] · [별지 제42호서식] · [별지 제44호서식] 및 [별지 제47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

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결산확정일이 도래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23호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3803호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인정이자계산의 적용례)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최초로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금융보험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당해 법인이 수입하는 수입금액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공익법인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제5조제1항제5호 · 제6호 및 제10호의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3] 청소년수련시설별 기준면적(제18조제3항제23호 관련)

청소년 수련시설	기 준 면 적
청소년 수련원	수용정원×200제곱미터
청소년 수련마을	수용정원×200제곱미터
청소년 수련의집	수용정원×200제곱미터
청소년 야영장	수용정원×200제곱미터

□ 개정이유 □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 가. 법인 소득계산시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금의 범위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가로 포함시킴(제9조제2항).
- 나. 법인이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바, 토지 초과이득세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조정함.
- (1)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공해공장인접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공장구내의 토지와 이인접토지를 합한 면적을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함(제18조제3항제2호가목).
- (2) 건축물의 특성상 고층으로 짓기 부적절한 창고용건축물 및 위험물저장시설의 부속토지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은 건축물의 연면적과 용적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바닥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기준으로 하여 바닥면적과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2호다목).
- (3)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준보전임자안에 있는 임야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에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중인 임야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3항제4호다목).
- (4) 청소년수련시설용 부동산으로서 시설·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부동산과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에 추가로 포함시킴(제18조제3항제23호).
- 다. 종전에는 법인이 야적장·적치장 및 하치장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일정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입물자의 원활한 수송·보관 및 하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를 부동산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규지대상 부동산의 범위에서 제외함(제18조제21항).
<재무부 제공>